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

*공고일정 변경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**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공연예술 유통플 랫폼을 통해** 지역에서 다양한 기초예술 공연이 유통될 수 있도록 「**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**」을 추진합니다. 해당 공모의 공고일정을 변경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2026년 주요 변경 사항

구분	기존(2025년)	2026년
지원신청	O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의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	O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공연예술유통 플랫폼에 가입하여 정보등록 후 지원사업 신청
지원예산	O 총 260억원 - 사전매칭 180억원, 사후매칭 80억원	O 총 250억원 내외 (예정) * 잔여 예산 발생 시, 공연시설로부터 미선정된 추천공연을 추가 신청받아 예산소진 예정
공모방식	O 1차 사전매칭, 2차 사후매칭 순차 운영	○ 사전+사후매칭 결합된 통합공모 운영
신청규모	O 공연단체당 총 10건, 총 10억원 O 공연시설당 총 10건, 총 10억원	○ 공연단체당 최대 2개 공연작품 등록 ○ 공연시설당 최소 3개, 최대 7개 공연작품 신청
신청방식	○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사전 협의하여 공모 신청하는 사전매칭○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선정한 공연작품을 공연시설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사후매칭	○ 공연단체가 지원사업 대상 공연등록 후, 공연시설이 등록된 공연 중 최대 7개 작품 신청 ○ 공연시설의 공연작품 신청현황에서, 공연단체가 작품 1개당 최대 5개 공연시설 선택 ○ 공연시설이 1.5억원 한도 내에서 최종 확정된 공연에 대해 지원사업 신청
지원심의	O 장르별·분야별 전문가의 공연단체, 공연작품, 공연유통 우수성 심의 * 장르별·지역별 균형 안배 우선 고려	O 별도의 심의 없이, 공연단체, 공연작품, 공연시설의 지원신청 가능 요건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검토
지원규모	O 공연시설·공연단체당 총 10건, 총 10억원까지 지원	○ 공연시설당 최대 1.5억원 지원 ○ 공연단체당 최대 5억원 지원 ○ 공연작품당 최대 5개 공연시설 지원

□ 사업 목적

o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을 통해 공연시장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공연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, 공연산업의 활력 제고

□ 사업 기간

ㅇ 2026년 1월 ~ 12월 (공연 기간: ~ 2026년 12월 20일(일) 종료)

□ 사업예산

ㅇ 총 250억 원 내외 지원 * 변동 가능

□ 사업 신청

○ (온라인 신청) 공연예술유통 P:art:ner (https://gokams.or.kr/partner)

「공연예술유통 P:art:ner」는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공연유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한 B2B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

단체·작품·시설 정보를 표준화해 수집·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고, **효율적인 유통과 상호** 협력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플랫폼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,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, 다양한 공연정보와 유통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.

 ○ (신청 절차) 회원가입·정보등록 → 공연단체 공모신청 → 공연시설 사업신청 및 공연선택 → 공연단체 공연시설 선택 → 공연시설 신청공연 및 지원금 확정



* 공연단체 신청 절차			
① [1단계]	공연유통플랫폼에 '공연단체*' 회원으로 가입		
회원가입	*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기획제작사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		
	↓		
② [1단계] 정보등록	'단체'와 '공연' 정보등록		
	+		
③ [3단계]	「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」사업에 참여할 공연작품을 공연단체		
공연신청	당 최대 2개까지 신청		
†			
	공연작품에 대한 공연시설의 신청현황(5단계) 확인 후, 공연작품당 최대		
	5개까지 공연시설을 선택		
○ FZEF게1	* 공연단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므로 공연단체가 공연시설 선택 시, 공연작품에		

(4) [7단계] * 공연단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므로 공연단체가 공연시설 선택 시, 공연작품에 대한 사업참여 여부, 공연 일정, 무대 규모, 예산 등을 공연시설과 상호 확인 권장 * 공연시설당 지원금은 최대 1.5억 원이며, 공연단체로부터 선택받은 공연작품들의(시설당 최대 7개) 예산 총합이 이를 초과할 경우, 8단계에서 공연시설이 예산 범위 내공연작품을 최종 선택

1

③ [10단계] 공연시설이 최종지원 신청한 결과(8단계)를 통해 공연시설-공연단체-공 결과 확정 연작품 확정 및 공개

* 공연시설 신청 절차

① [1단계] 공연유통플랫폼에 '공연시설*' 회원으로 가입

회원가입 │ *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공연시설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

② [1단계] '공연시설'과 '공연장' 정보등록*
정보등록 *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 미제공 시 :

정보등록 ↑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 미제공 시, 지원사업 신청 불가

지원 신청하는 공연장의 시설조건, 예산 등을 고려하여 '공연작품 목록'*에서 관심 공연검색 후, 신청페이지에서 관심 공연의 지원신청정보 (과거 실적, 예산, 일정 등) 확인

※ 플랫폼 공지사항에 별도 공개, 공연단체가 등록 신청한 공연은 장르·예산·실적·기관추천 등을 기준으로 공연작품 목록을 제공하여, 공연시설의 공연작품 선택 편의성 제고

* 추천공연 목록제공(문체부 유관기관 공연 제작·유통 사업선정 작품)

- 추가 공모 시, 추천목록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를 정책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미선정 된 공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 예정
- 단, 하기 공연작품도 공모 신청을 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

③ [5단계]공연검색

추천기관	대상 사업	대상 공연작품	
예술경영	공연예술 지역유통	`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`24~`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공연 중 좌석 규모별(300석 미만/300석 이상) 유료티켓판매 상위 50% 또는 객석점유율 상 위 50% 공연	
지원센터	서울아트마켓	`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`24~`25년 팸스초이스 선정작	
	장르별 시장 거점화	'25년 장르별 시장 거점화 선정 축제 추천작	
국립정동극장	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 `24~`25년 세실 창작ing 선정 추천작		
		KOPIS에 집계된 `24~`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의 대표 공연 중 `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작품	
한국문화 공연예술 '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'23~'24		`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`23~`24년 올해의 신작 선정작	
한국문화예술 코카카아트 회관연합회 페스티벌 `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쇼케이스 선정작		`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쇼케이스 선정작	

1

공연시설은 '신청공연 장르 구성 조건*'을 고려하여 공연작품을 최소 3개이상 최대 7개까지 선택. 단, 특정 장르 쏠림을 막기 위해, 첫 번째로 선택하는 작품은 뮤지컬·발레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 반드시 선택 필요

④ [5단계]공연 선택

* 지원사업 신청공연 장르 구성 조건

- O (지원 한도) 최대 지원금 1.5억 원을 고려하여, <u>서로 다른 장르 공연</u>을 최소 3개 신청해야 하며, 최대 7개까지 신청할 수 있음
- O (장르별 신청 제한) 인기 장르 편중을 해소하고자, 장르별 선택공연을 아래와 같이 제한함

듄	분야	장르	신청 제한	
(フト)	분야	②무용(한국·현대무용), ④연극, ⑤음악, ⑥전통	장르별 최대 2개 공연 까지 신청 가능	
(나)	분야	⊅ 무용(발레), ● 뮤지컬	2개 장르 중 1개 장르만 선택하여 최대 1개 공연 까지 신청 가능	
O (선택 규칙) 공연시설이 신청공연을 선택할 때(최소 3개, 최대 7개), 1 순위는 반드시 (가) 분야 작품에서 우선 선택해야 함(1순위에 무용(발 레) 또는 뮤지컬 선택 불가)				
※ 공연작품 장르 구성 신청 예시				

	고거· 1스의/⋒저토\ 고스의/▲무지커\
• -	5건: 1순위(⑭연극), 2순위(❹무용(발레)), 3순위(⑮음악), 4순위(ఄ전통) 5순위(⑭연극)
가능	4건: 1순위(@전통), 2순위(♪무용(발레)), 3순위(⑷연극), 4순위(◎전통)

3건: 1순위(☞음악), 2순위(●뮤지컬), 3순위(☞연극)

2선: 1순위(●선동), 2순위(●유시걸) ※ 최소신청 건수 미충족(최소 3개 이상 공연 선택 필요)

3건: 1순위(●뮤지컬), 2순위(무용(현대)), 3순위(⑭연극) <u>※ 우선 선택 장르 미충족((나)분야 뮤지컬 1순위 선택 불가)</u>

불가능

4건: 1순위(೨ 무용(한국)), 2순위(♣ 뮤지컬), 3순위(♣ 연극), 4순위(♣ 무용(발레))

※ (나) 분야 장르 신청 건수 초과((나)분야 뮤지컬, 무용(발레) 중 1개 장르 1개 공연만 선택 가능)

5건: 1순위(②무용(한국)), 2순위(②무용(현대)), 3순위(**②**무용(발레)), 4순위(⑤음악), 5순위(⑥연극)

※ 장르별 최대신청 건수 초과(장르별 최대 2개 공연까지 선택 가능)

※ 공연시설이 4단계에서 공연작품 선택 시, 이후 6단계에서 공연단체도 공연작품 유통을 희망하는 공연시설을 최대 5개 내에서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, 공연단체와 공연작품에 대한 사업참여 여부, 공연 일정, 무대 규모, 예산 등 사전 확인 권장

1

⑤ [9단계] 지원신청

공연시설은 공연단체가 확정한 유통 가능한 공연작품을 확인 후, 최대 지원금 1.5억원 내에서 공연을 선택하여 지원신청

※ 단, 공연단체가 확정한 공연작품의 예산 총액이 1.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선택 절차 없이 결과를 확정하며, 1.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연시설은 최소 2개 이상의 공연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

1

⑥ [10단계]결과 확정

공연시설이 최종지원 신청한 결과(8단계)를 통해 공연시설-공연단체-공 연작품 확정 및 공개

□ 사업 신청 대상

- ㅇ (공연단체)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
- ㅇ (공연작품) 제작 완료 후 유료로 상연된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

족하는 기초 공연예술(연극, 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) 작품

- (공연시설)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
 - (문예회관) 전국 문화시설 총람(최신 기준)에 등재된 문예회관
 - (기타 공공 공연장) 총람 등재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(공단, 공사 등)에 의한 설립 및 위·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
 - *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. 별도의 공연시설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

지원 신청 예시

운영주체 : (재)예경문화재단

운영 공연시설: 예경아트센터, 예경시민회관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

- → (1)예경아트센터 (2)예경시민회관 각각 신청 및 지원
- → 단, 지원금은 운영 주체인 (재)예경문화재단(예경아트센터), (재)예경문화재단(예경시민회관)으로 교부함

□ 세부 공모 일정



□ 지원 규모

- (공연단체 기준) 단체당 최대 2개 공연작품, 최대 5억 원 이내 지원
- (공연작품 기준) 작품당 최대 5개 공연시설에서 공연유통 지원
- (공연시설 기준) 시설당 최소 2개 공연작품*, 최대 1.5억 원 이내 지원
 - * 단. 공연단체가 확정한 유통 가능한 공연작품이 1개인 경우 예외 지원
 - 공연시설은 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금)의 10% 이상을 필수로 자부담 편성해야 하며, 공연 용역비를 자부담 일부로 편성 가능
 - * 단. 자부담금을 공연 용역비로 전체 편성은 불가
 - 공연시설은 최종 공연 확정 단계(9단계)에서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단체가 최초 산정한 공연 용역비를 10% 이내 가감하여 공연

용역비 조정 가능

- (지원예산) 총 250억원 내외 지원금에서 지원신청 공연시설 수에
 따라 공연시설당 총 지원액* 변동 가능(최대 1.5억원 이내)
 - *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액 = 250억 원 ÷ 지원신청 공연시설 수 단, 공연시설의 보조금 신청금액이 최종 산출된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 액보다 작은 경우, 가감 없이 신청금액 지원 가능
 - * 지원액 감소 시, 공연시설은 자부담을 추가 편성하여 용역비를 보전하거 나, 상호 협의하여 공연단체가 최초 신청한 공연 용역비의 10% 이내에서 가감하여 용역비 신청 가능

□ 지원 방식(무심의·자율 매칭)

- 「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」은, 지원 신청단체, 신청공연, 신청 공연시설이 지원요건에 적격한 경우, 총예산 내에서 공연시설과 공연단체가 상호 선택한 공연을 지원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시설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, 공연시설은 공연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사업을 책임 운영

□ 지원내용 및 절차

- ㅇ (지원 내용) 공공 공연시설의 사업비(공연 용역비) 일부 지원
- (지원 절차)

<주관기관> 예술경영지원센터 →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

<보조사업자> 공연시설

→ 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 <용역계약자> 공연단체

□ 지원 신청자격

- (공연단체) 기초공연예술분야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제작사
 -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(면세·과세·간이)
 -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시설과 용역 계약 체결 가능한 단체
 - 지원사업 제외 대상(공연단체)

지원사업 제외 대상(공연단체)

-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단체
- * 고유번호증만 보유 시, 참여 불가하며,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필요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
- 지역 순회공연 운영대행사

○ (공연작품) 기초공연예술분야(무용, 뮤지컬, 연극, 음악, 전통) 공연

- 장르 : 무용, 뮤지컬, 연극, 음악, 전통
 - * 다원/복합장르는 주된 1개 장르로 선택하여 신청
-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작품
- 1) 기존 상연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작품
- 2) '25년 8월까지 1회 이상 전막 유료 공연 이력이 있는 공연
- 3) 공연 신청예산을 공연시설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공연
- 4) 신청공연의 과거 실적(티켓매출액, 관객수)을 공연시설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작품
- 지원사업 제외 대상(공연작품)
- 기초 공연예술 분야 외 내용이 주된 공연(대중음악, 토크콘서트, 마술쇼, 버블쇼, 개그 공연, 무예, 스포츠댄스, 아이스 갈라, 영화·게임 음악, 시낭송회, 캐릭터공연 등)
- 전막 공연 외 공연(쇼케이스, 트라이 아웃, 갈라 콘서트)
- 내한공연, 라이선스, 리사이틀 공연
- 국·공립예술단체의 공연
-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
- 종교기관 및 소속 단체 관련 행사성 공연

○ (공연시설)

-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연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용역비 집행이 가능한 시설
- 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한 공연시설 (예, 총사업비 100% = 자기부담금 10% + 지원신청액 90%)
- 공연예술플랫폼 내 공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공연시설과 공 연장 정보를 제공한 시설
 - * 필수 제출 기초 무대기술자료

분류	필수 제출자료
무대	무대장치 목록, 평면도 및 단면도, 배치도
기계	무대기계 장비 목록
조명	조명 장비 목록
음향	음향 장비 목록

- * 상기 목록 외에 정보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사업 신청 가능
- * 추후 공연단체가 요청하는 경우, 요구자료 제공 필수

지원사업 제외 대상(공연시설)

-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및 국립시설, 민간시설

○ (공통 필수 요건)

- 공연예술 유통플랫폼(공연예술유통 P:art:ner) 가입 및 신청 필수
-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사업 내용(일시, 장소, 예산, 수익분배, 역할 등) 에 대한 상호 사전확인 필수
- 공연단체는 공연시설과 공연 진행에 필요한 무대, 장비 등 사전 확인 필수
- 국가계약법 및 「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」 매뉴얼에 근거한 공연단체 용역 계약 필수
-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용역 계약을 위한 서면 계약서(문화체육관 광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가능) 작성 필수
- 공연단체 용역비 선금 지급 권장
- 유료 공연 필수(정가 10,000원 이상/할인정책 적용 가능)
-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·발권 시스템 이용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실적 공개 필수
- 지원사업 제외 대상(공통)

지원사업 제외 대상(공통)

-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의 지역축제, 발표회, 정기연주회 등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
- 동일한 공연시설에서 동일 작품을 2년 내('24-'25년) 상연한 경우

□ 지원 적격성 검토

o (검토방식) 공연예술유통 플랫폼 등록 시,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사업 신청대상인 공연단체, 공연작품, 공연시설의 지원사업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신청 승인

ㅇ (검토 기준)

-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지원 가능한 대상 여부
-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공연작품 인지 여부
- 공연단체, 공연시설, 공연작품의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
- 공연단체, 공연시설, 공연작품의 지원 결격 여부
- 필수 제출자료(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) 제출 여부
-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의 신청예산의 적정성 여부

□ 지원 유의사항

-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, 지원 불가
 - * 지원확정 후, 지원 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가능
- · 기획재정부「보조금법」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
- ·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
- 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·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·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(단,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·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)
 - *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<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>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
- ·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- ·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기관
- ·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,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 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
- ·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
- ·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

□ 예산편성 세부기준

- ㅇ 총사업비의 10% 이상 공연시설 자부담금 책정 필수
- < 공연단체 예산편성 항목 예시 > (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지원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 - ※ (공연단체 공연료 유의사항) 공연단체 공연료 책정 시 실제 소요 단가보다 부풀려 책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해당 단체는 향후 유통사업 지원에서 배제함
 - 해당 공연단체의 작품 관련 정보(예산, 참여자 등)는 국회 등에서 정보 제출 요구 시 상시 공개될 수 있음

목	세목	보조금	비고
	일반 수용 비 (01)	- 연출,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- 홍보·마케팅비 - 물품운송비	
① 운영비	공공 요금 및 제세(02)	- 상해보험료(필수)	*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
	임차료	- 연습공간 임차료	* 신청주체 소유·관리 연습공간 임
(210)	(07)	- 장비 임차료	차료는 지급 불가
	복리후생비 (12)	- 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(필수)	*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 담분 납부
	일반 용 역비 (14)	- 조명 용역비 - 무대 용역비 - 음향 용역비	* 소모성 공연소품 외 투어공연을 위한 신규 무대 및 소품, 의상 제작비 편성 불가
② 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- 식비 - 숙박비 - 교통비	* 공무원 여비 기준 준수

③일반관리비	- 기타 간접 경비	* ①+② 총액의 5% (단, 최대 1,500만원)
④단체이윤	- 단체 이윤 책정	* ①+②+③ 총액의 8% (단, 최대 1,500만원)
⑤부가가치세	-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편성 불가	* ①+②+③+④ 총액이 10% (간이과세자도 동일)

< 공연시설 예산편성 항목 예시 > (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지원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
목	세목	자부담금	보조금	비고
운영비	일반 수용 비 (01)	- 비상근인력(단기인력, 7 - 홍보비(리플렛 및 현수 -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	•	
(210)	일반용역비 (14)	- 공연단체 대상 순회공 역 - 공연 연계 부대 프로그 - 홍보 대행 용역비 등		* 순회공연 용역비는 견적서 제출 필수

- ※ (편성 불가 항목) 상근인력 인건비,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 득비(악기 구입비 등), 회의진행 경비(다과, 식대 등)
- · (부가가치세 편성)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
- · (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)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에 대하여 (재)예술경 영지원센터 지정 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함
 - * 회계 검증 수수료 단가 (이외의 예산은 추후 협의)

회계검증수수료(원) *부가세 포함
328,000
389,000
422,000
585,000
633,000
683,000
731,000
779,000
982,000
1,034,000
1,225,000
1,485,000

□ 지원신청

- o (신청기간) 2025년 10월 13일(월) ~ 12월 2일(화)
 - (공연단체) 10.13.(월)~11.4.(화) 17:00 마감
 - (공연시설) 11.17.(월)~12.2.(화) 17:00 마감
 - * 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제출 불가
- o (신청방법) 공연예술유통 P:art:ner(https://gokams.or.kr/partner)
 - * e나라도움,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 불가

□ 지원조건

ㅇ e나라도움(www.bojo.go.kr)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·정산

- 지원금은 공연시설에 교부되며,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지원조건에 따라 공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례비 지급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「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기준 안내서」의무사항 준수
 - 사업참여자 역할, 참여 기간, 연령, 사례비 지급금액 등에 따라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및 신고·납부 필요
 - 사업참여자 전원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 참여 후 교육 이수증을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·관리 필요
 - 사업참여자 전원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며,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·관리 필요
 - *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할 경우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

□ 단계별 필수 제출서류

단계	제출대상	제출자료	제출방법 및 유의사항
		[공연 정보입력 메뉴]	
		① 공연 용역비 산출내역서	지정양식 활용(excel), 신청 시 첨부
		[제출서류 등록 메뉴]	
③ 단계	공연		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'My통계의 공
- 공연작품		 ① 티켓매출액, 관객수 증빙자료	연통계(회차별)'에서 신청한 공연의 최근
유통 신청	단체	① 디삿메칠ㅋ, 한국구 ㅎㅎ시표 	공연실적(티켓판매수, 티켓판매액)을 PDF로
			다운로드하여 , 신청 시 첨부
		②-1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서약서	기저야시 항요/(bg.) 시처 시 처ㅂ
		②-2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지정양식 활용(hwp), 신청 시 첨부
⑤ 단계	고어	①-1 공연신청내역서	지거아시 하으레 그 시치 내 치니
- 공연시설	공연	①-2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지정양식 활용(hwp), 신청 시 첨부
지원신청	지원신청 시설	② 공연시설 사업참여 자격요건 확인서	지정양식 활용(hwp), 신청 시 첨부
⑦ 단계	공연		
- 공연시설	단체	① 공연작품 유통희망 공연시설 신청서	지정양식 활용(hwp), 신청 시 첨부
선택	E 711	- 417 701141110	
⑨ 단계- 최종지원	공연 시설	① 최종 공연신청내역	지정양식 활용(hwp), 신청 시 첨부
		② 예산계획서	지정양식 활용(excel), 신청 시 첨부
신청		(공연시설, 공연단체)	100 1 20 (6.66.)// 20 1 11

*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 처리

□ 문의 -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

- (이메일) promokams@gokams.or.kr, (전화) 02-708-2225
 - * 문의 가능 시간 : 월~금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